

서울특별시 중남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98
------	------

2026. 3.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김규남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규남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당연직·임명직 관련 규정 없이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 반영과 원활한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필수 사항인 임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에 대해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제3항).
- 나. ‘임명직 위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제3항제1호 신설).
- 다.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이주대책 위원회가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되고 임기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연직·임명직 위원을 명시하고 위원 임기를 규정하여 관계기관 의견 반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963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풍납동 토성은 1993년 서울시가 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복원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지역 슬럼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¹⁾.
- 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7월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특히 풍납동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25년 10월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1) 시행 2021. 6. 10.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다만 현행 조례는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 임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위원 자격 또한 민간위원의 위촉 규정만 두고 있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도시개발·부동산·건설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 ⑥ (생략)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에 동 개정안은 풍납동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로써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명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하겠음.

다.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무원의 위원 임명(안 제5조제3항)

- 안 제5조제3항은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의 당연직·임명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및 의견을 적기에 반영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한다</u> . <u><단서 신설></u> <u><신 설></u> 1. ~ 5.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u>1. 문화유산·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u> <u>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u>

- 현행 조례는 위원의 자격과 시장의 위촉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하기에 제약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은 위원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분류하고, 이 중 당연직은 해당 직위가 당연히 위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명으로 표현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위촉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

- 당연직 : 해당 직위가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예시) (당연직) 위원은 ○○실장, ○○○본부장이 된다.
- 임명직 :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명으로 표현함. 당연직은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임명직은 특정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을 선택할 수 있음
(예시) 일자리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복지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 위촉직 : 민간위원의 경우 임명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위촉으로 표현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장의 위원 임명 권한을 명기하고, 자격 조건에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직접 연관된 부서인 ‘문화유산 및 주택 등’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신설되는 단서의 경우, 당연직 위원의 자격으로 ‘시 문화유산 활용 담당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당연직은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 -----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 ----- ----- 과장은 ----- -----.

(2) 위원회 임기(안 제5조제4항 및 제7항)

- 안 제5조제4항은 위원회 임기,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안 제5조제7항은 임기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던 내용 중 ‘임기’를 삭제해 현행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 설></p> <p>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임기·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⑦ ----- 해촉 ----- ----- ----- -----.</p>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위원회 관련 총칙 규정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행 조례는 임기 관련 규정 없이 시행되어 왔음.
- 그러나 서울시와 지역주민 간 공식적인 의견 교환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속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2월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돼²⁾ 수정가결되었음.

2) 김규남 의원 외 29명 공동발의(2025. 2. 3.)

< 제328회 임시회(2025. 3.)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u>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위원장의 요청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u>연 2회 이상</u> ----- ----- -----.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 당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상설 운영 기준³⁾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가지도록 하였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타 위원회에 비해 개최 횟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밝혀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상설화되지 못한 바 있음.

○ 이후 서울시는 2025년 10월 위원회 출범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2년 임기 12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당연직(문화유산활용 과장) 1명, 임명직(문화유산, 주택 관련 부서의 과장) 2명을 임명하기로 계획하였음.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상설 위원회는 ‘위촉되는 위원이 일정 기간 임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위원회’, 비상설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없이 회의 소집 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료와 동시에 해촉하는 형태의 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서울시는 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상설 운영 기준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실제 운영방식에 위원의 임기를 둔 것은 필요시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됨.
- 또한 관계 공무원을 당연직·임명직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 개최 횟수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된 후 지난 1년간 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되었다는 점은, 위원회의 운영은 최소화하되 행정적 편의만을 유지하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임.
-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풍납토성 위원회 운영' 750만원을 4,750만원으로 증액·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과 서울시 간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상설화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2022)」는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안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u><신설></u>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u>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 ----- ----- ----- <u>다만,</u> ----- ----- -----.

의안번호
3498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규남 등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례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당연직·임명직 관련 조항이 없어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의견 반영과 원활한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 ○ 필수 사항인 임기 규정이 부재하여 조례 개정 필요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 명시 ○ 위원의 임기 규정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2024.7.15.) ○ 조례 일부개정(2025.3.27.)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원안의 일부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은 해당 직위가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보궐위원 임기 관련 조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잔여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음 ○ 차기 회기에 미처리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큰 문제는 없으나, 원활한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안건 처리 필요 				
대응방안	○ 조례 개정 담당 팀장·과장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하여 개정 필요성 등 설명 예정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담당부서	문화유산활용과	팀장	진희원(☎2133-2622)	담당	이지수(☎2133-264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당연직은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 안 제5조제3항 단서를 직위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2022)」는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나. 수정주요내용

- “4급 이상 공무원은”을 “과장은”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3항 단서).
-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4항 단서).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98
----------	------------

제안년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당연직은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 안 제5조제3항 단서를 직위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2022)」는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가. “4급 이상 공무원은”을 “과장은”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3항 단서).
- 나.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4항 단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단서 중 “4급 이상 공무원은”을 “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를 “다만,”으로 한다.

<p>④·⑤ (생략)</p> <p>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임기·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p>	<p>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⑦ ----- ----- <u>해촉</u> ----- ----- ----- ----- ----- ----- -----.</p>	<p>----- ----- --.</p> <p>⑤ ~ ⑦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임기·해촉”을 “해촉”으로 한다.

1. 문화유산·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p> <p><신설></p> <p>1. ~ 5. (생략)</p> <p><신설></p> <p>④·⑤ (생략)</p> <p>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문화유산·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p> <p>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⑦ ----- -- 해촉 ----- ----- ----- ----- ----- -----.</p>